

발급확인번호

36482A12929977

근로자재해공제증권(변경)

변경기준일: 2023년11월27일



증권번호 제 2023ABP0ELA200448-0001호

구분	상호	대표자	법인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
공제계약자(피공제자)	에스제이일렉 주식회사	정도솔	190111-0057362

공제기간	계약형태	공제수수료 납입방법
2023년01월01일 24:00 ~ 2024년01월31일 24:00	구간계약	일시납

사업장정보	사업장(공사)명	삼성전자로지텍 이천 신창고 자동화_CV_제어부 사외용역		
	소재지	99999 전국일원 9999 - 999 현장		
	사업의종류	기타건설공사(전기공사)		
	공사금액	*506,100,000원	임금	*455,640,000원
보상한도	1인당 *200,000,000원	1사고당	*500,000,000원	

공동피공제자 (주)에스에프에이 (1942110032714)

기본약관 [보통약관][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]

특별약관 [공제기간자동연장 특별약관]

에스제이일렉 주식회사의 본건 현장근로자만을 담보합니다.

현장주소 :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산 29-1

추가 기재 사항

변경후 공제수수료 *738,100원

추가(환불) 공제수수료 *0원

이 변경증권은 계약변경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, 실제 변경내용은 청약서(변경) 및 공제약관에 따릅니다.

증권 발급점 : 경기북부지점

전화번호 : 031-826-03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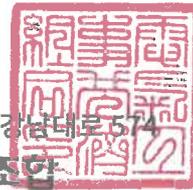
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4층

영업점장 : 송기한



2023년 11월 27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74
전기공사공제조합



이사장 백남길



- ※ 1. 이사장의 직인, 인감 및 영업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하거나 정정, 가필, 복사된 증권은 무효입니다.
- 2. 이 증권의 발행은 계약체결의 증거이며, 실제 계약내용은 청약서 및 공제약관을 따릅니다.
- 3. 이 상품은 삼성화재해상보험(현대해상화재보험,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동)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.
- 4.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출력하신 공제증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QR코드가 인식되지 않는 공제증권의 경우 위변조된 공제증권일 수 있으니 공제증권상의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공제계약자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.

아래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·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

1. 청약서에 회사 또는 대표자의 도장으로 날인하셨습니까?
☞ 청약서에 회사 또는 대표자의 도장 날인 또는 전자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.
2. 공제가입시 청약서 기재사항 또는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셨습니까?
☞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,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,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3. 공제약관 및 공제증권은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 받으셔서 확인하셨습니까?
☞ 보장내용, 공제상품, 공제기간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. 공제수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.
5. 공제 가입후 임금 변동, 사업종류 변경·신설, 공사기간 연장 및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은 후 필요시 수수료를 추가 납부 및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.
6. 국내 공사중에 발생한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의거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담보(개별약관)에 따라 보상하며, 직업훈련생 및 해외공사중인 근로자의 재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7.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며, 피해자가 피공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받기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.

□ 보상하는 손해

- ☞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단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,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제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상함.

□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
- ☞ 피공제자의 원수급인,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.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공제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
- ☞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

- 사고처리 안내: 관할 영업점 또는 제휴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후, 손해사정 및 보상을 진행합니다.



손해사정 접수 담당자 ☎ 070-7111-3788